

1999. 12. 13

제91회 정기회

검 토 보 고 서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자 : 전문위원 장재영)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1999년도 제2회 追更豫算案의 주요내용

1. 서구청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99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88,011,238	75,288,283	12,722,955	16.90
일반회계	79,591,864	68,147,896	11,443,968	16.79
특별회계	8,419,374	7,140,387	1,278,987	17.91

2. 위원회 소관별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99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88,011,238	75,288,283	12,722,955	16.90
의회운영위원회	920,819	900,028	20,791	2.31
기획총무위원회	30,475,136	27,597,306	2,877,830	10.43
사회도시위원회	48,195,909	39,650,562	8,545,347	21.51

3.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1) 세입예산안(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7,234,307	42,637,408	4,596,899	10.78

□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증(△)감액	비 고
합 계	4,596,899	
지방세수입	876,534	
지 방 세	876,534	
보 통 세	653,100	
목 적 세	473,100	
과년도수입	73,434	
세외수입	608,686	
경상적 세외수입	483,641	
수수료수입	△201,571	
징수교부금수입	483,133	
이 자 수 입	21,079	
임시적 세외수입	42,973	
잡 수 입	42,973	
지방교부세	900,000	
조정교부금	1,927,120	
보 조 금	366,631	
국고보조금	△58,389	
시비보조금	425,020	

□ 부서별 증감된 세입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7,234,307	42,637,408	4,596,899	10.78
기획감사실	24,884,943	22,969,943	1,915,000	8.34
총 무 과	126,616	26,616	100,000	375.71
주민자치과	1,542,005	480,350	1,061,655	221.02
사회진흥과	2,154,623	2,036,971	117,652	5.78
지 방 세과	17,288,939	15,908,193	1,380,746	8.68
민원봉사과	424,491	405,645	18,846	4.65
보 건 소	812,690	809,690	3,000	0.37

(2) 세출예산안(일반회계)

■ 소관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0,475,136	27,597,306	2,877,830	10.43
기획감사실	12,346,290	10,751,922	1,594,368	14.83
정보홍보실	674,130	654,130	20,000	30.57
총 무 과	4,534,043	4,493,284	40,759	0.91
주민자치과	1,347,193	62,930	1,284,263	2040.78
사회진흥과	3,427,683	3,288,031	139,652	4.25
지 방 세 과	369,511	369,511	0	0
민원봉사과	227,571	431,783	△204,212	△47.30
보 건 소	2,204,151	2,201,151	3,000	0.14
동 예 산	5,344,564	5,344,564	0	0

(3) 명시이월비

■ '99 예산 ⇒ 2000 명시이월사업조서(변경)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분	1999년도 예산			2000년도 명시이월	이월사유
			예산현액	배정액	지출원인행위		
합계	1건	수정안	108,623			108,623	
		제출안	217,246			217,246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수정안	108,623			108,623	행자부의 사업 계획변경
		제출안	217,246			217,246	

■ '99 예산 ⇒ 2000 명시이월사업조서(추가)

(단위 : 천원)

사 업 명		1999년도 예산			2000년도 명시이월	이월사유
		예산현액	배정액	지출원인행위		
합 계	3건	1,112,710	251,783	251,783	860,927	
유급주휴수당		473,927			473,927	-
동민의 집 집기구입		583,783	251,783	251,783	332,000	사업발굴지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55,000			55,000	소요예산 결산추경확보

II. 검토의견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및 취로사업 등 실업대책비와 그 동안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와 당면현안사업비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주안을 두고 編成된 예산안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세입은 10.78%인 45억 9,689만 9천원, 세출은 10.43%인 28억 7,783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세 입	47,234,307	42,637,408	4,596,899	10.78
세 출	30,475,136	27,597,306	2,877,830	10.43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집행부 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이번 追更豫算案에 대한 편성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編成過程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예산의 전액삭감에 대한 의견입니다.

중국청도시 시북구 자매결연 사업과 관련하여 '99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방문여비와 초청여비를 계상하여 방문여비는 이미 집행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초청여비(외빈초청여비)를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한 것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잘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외국의 특정지역을 방문하고, 또 다시 그 특정지역의 인사를 초청한다는 것은 동일한 목적 사업에 중복 투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입각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록 금액은 450만원에 불과하지만, 그 동안 가용재원이 사장되어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지 못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 왔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투자사업에 있어서 투자해야 할 사업간의 우선 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 보며, 앞으로 예산편성 시 투자사업간의 우선 순위 및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규 자체사업의 추경 편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종합 및 부분감사 자료정리용 노트북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 성격상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연말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특정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점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조 제2항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경편성 사유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이와 같은 예산편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일용인부임의 유급주휴수당의 3년간 미지급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정기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일용인부임의 유급주휴수당은 인건비로서 마땅히 당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하나 '99년도 정리추경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를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추경편성사유로서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의 보정제도의 하나로서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의 성격상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물론 서구청은 이 사업예산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인건비에 해당하고 본예산 성립 전에 예산이 가능한 이 예산을 정리추경에 신규 계상하는 것은 추경 편성사유나 명시이월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며, 이월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